

# 대외지급 세무비안 편의성 향상, 컴플라이언스 요건에 주목

2021 년 6 월

Issue 12

## 개요

2013 년 국가세무총국, 국가외환관리국 공고[2013]40 호(이하 "40 호 공고")가 정식 발효된 이래, 중국 서비스무역 등 프로젝트에 대한 대외지급 세무비안 절차가 계속 간소화되어, 세무기관의 관리감독의 중심이 사전심사에서 일상적인 조세 관리와 송금 후 심사로 이동했으며, 서비스무역 등 프로젝트의 대외 지급 세무 비안의 "전천후", "No Paper", "비접촉", "지역 호환" 처리를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세무총국과 국가외환관리국은 "放管服(放管服, 정부권한 축소, 공정관리 강화, 서비스 최적화)" 개혁을 더욱 심화하고, 경영 환경을 최적화하며 무역투자 자유성, 편의성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가세무총국, 국가외환관리국 서비스 무역 등 항목 대외지급 세무 비안 관련 사항에 관한 보충 공고 (의견수렴본)>(이하 "<공고>")를 공동 발표하고, 여러가지 편의성 조치를 추진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편의성 작업과 함께 <공고>가 세무기관의 15 일 이내 사후심사 규정을 삭제하여, 납세자가 세무기관의 일상적인 조세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납세자 및/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외지급 관련 납세신고의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 상세 내용

### 세무비안 면제 대외지급 범위 확대

기존 40 호 공고에 따르면, 경내 기관/개인(이하 "비안대상자")이 해외에 한번에 5 만 USD 이상의 서비스 무역 등 항목에 따른 자금을 송금(예: 서비스무역수익, 배당금, 이자, 특허권사용료, 업무보수, 지분양도소득 등)하는 경우, 15 가지 경우<sup>1</sup>를 제외하고, 주관세무기관에 세무 비안을 해야합니다. 이번 <공고>는 세무 비안 면제 범위를 추가 확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세무 비안 요구를 없앴습니다: (1) 외국투자자가 경내 직접 투자한 합법적인 소득을 경내에 재투자하는 경우; (2) 재정 예산 내 기관, 사업체, 사회단체의 비무역 비경영성 지급 업무. 다만 유의할 점은, 외국투자자가 경내 재투자에 대해 이연납세 혜택을 적용받는 경우, 관계자는 여전히 규정에 따라 관련 비안 수속을 진행하고 세무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세무비안 횡수 축소

동일 계약 하 여러 차례 대외지급을 해야 하는 경우, 40 호 공고에 따르면, 비안대상자는 매번 지불 전에 세무 비안 수속을 해야 했습니다. <공고>는 여러번의 비안 요구를 삭제하고, 비안대상자의 첫번째 지급 전에 1 번만 세무 비안을 하면 되도록 개정했습니다. <공고> 발효 전에 이미 대외지급 세무 비안을 한 경우, <공고> 시행 후, 동일 계약 하 계속 대외 지급을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중복해서 비안할 필요가 없어, 기업의 행정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처리 채널 확대, 타지역 은행 송금 선택 가능

최근, 경영 환경 향상을 위해 각지역의 세무기관은 이미 온라인 세무 비안 처리 채널을 오픈했는데, <공고>는 온라인 처리 모델의 프로세스를 더욱 명확하고 상세하게 명시했으며, 기존의 오프라인 비안 채널도 선택할 수 있도록 남겨두었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비안대상자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 세무 비안 수속을 완료한 후, <비안표> No.와 인증번호를 근거로 은행에서 송금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실무적으로 타지역에서 대외 지급 세무 비안을 처리하는데는 일정 수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타지역 송금의 필요가 있는 경우, 비안대상자는 언제든지 해당 성의 전자세무국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비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안대상자는 <비안표> 작성 시, 전국 범위 내 외화 송금 은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안 완료 후, <비안표> No.와 인증번호를 근거로 타지역 은행에서 송금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세무기관 사후심사 기한 삭제

40 호 공고와 <국가세무총국 대외 지급 세무 비안 처리 집행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세총함[2016]452 호)에 따르면, 주관 세무기관은 <비안표>를 받은 날로부터 15 영업일 이내에 분류별 등급별 위험 관리 요건에 따라 후속 관리를 시작하되, 위험이 비교적 적은 지급 항목에 대해서는 무작위 샘플 조사를 진행하고, 위험이 비교적 큰 지급 항목에 대해서는 중점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조사 기간은 15 영업일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주관 세무기관은 <비안표>를 받은 후 15 영업일이 지난 이후에는 재조사나 소급조사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공고>는 40 호 공고의 주관 세무기관이 <비안표>를 받은 날로부터 15 영업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자료 제출과 <비안서> 작성이 완전한 경우, 주관 세무기관은 당장 납세 사항 심사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공고> 시행 후, 주관 세무기관의 후속 관리는 여전히 분류별 등급별로 관리하나 15 영업일의 제한은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사 결과 대외 지급 항목이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 발견되거나, 향유한 감면세 혜택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면, 납세자 및/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체납금 또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최근, 세무기관과 외환관리부문은 일련의 편의성 조치를 추진하여 기업들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고>는 기업의 대외지급 세무비안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여, 비안 횡수를 줄이고, 특히 동일 계약에 따른 여러 차례 지급에 대해 한번만 비안을 하도록 한 것과 외국투자자의 경내 재투자자는 비안을 하지 않도록 한 규정은 무역 투자 자유화 편의를 더욱 촉진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및/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조세 편의성을 향유함과 동시에 대외 지급 항목에 대한 세무 컴플라이언스 요구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40 호 공고 시행 이래, 비안 자료의 정확성에 대해 사전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지면서 실무적으로 세무기관이 대외지급 비안 후속 관리에서 기업의 대외 지급 항목이 제대로 납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을 발견하는 경우, 체납금을 부과하고 심지어는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 <공고>가 세무기관의 사후심사 기한을 없애면서, 기업의 대외 지급 항목에 대한 세무 컴플라이언스에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비교적 거액의 송금이나 특별한 대외 지급 사항(예: 대지급비용, 특허권사용료 등)의 성격 판단 및 세무 처리, 조세협정대우 및 기타 조세혜택의 적용 상황, 해외 특관자에 대한 비용 지급이 정상거래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특별히 유의하고 조사에 대비하여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할 것입니다.

PwC는 대외 지급 관련 각 당사자가 주관 세무기관과의 사전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비안 정보의 합규성, 진실성을 보장하며, 규정에 따라 각종 세금을 납부, 감면세 혜택을 신청하여 자체적으로 컴플라이언스 능력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공고>가 가져올 실무적인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

## 주석

---

1. 40 호 공고 제 3 조는 세무 비안을 할 필요가 없는 대외 지급 항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PwC China KBD (Korean Business Desk)에 문의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PwC China KBD CONTACT LIST

대표 나상원 **Partner** (86) (21) 2323-2625 sang.won.la@cn.pwc.com

북경 (회계감사 & Tax) 김도현 **Partner** (86) (10) 6533-3596 dh.kim@cn.pwc.com

(회계감사 & Tax) 윤석 **Director** (86) (10) 6533-3219 dan.s.yoon@cn.pwc.com

(회계감사 & Tax) 유태정 (86) (10) 6533-5733 taejeong.t.you@cn.pwc.com

상해 (회계감사 & Tax) 신영직 **Director** (86) (21) 2323-1080 jake.shin@cn.pwc.com

(회계감사 & Tax) 정자현 (86) (21) 2323-8879 jaheon.jjeong@cn.pwc.com

(TP) 최영선 (86) (21) 2323-1331 chris.choi@cn.pwc.com

광주 (회계감사 & Tax) 박길수 (86) (20) 3819-2503 gilsoo.p.park@cn.pwc.com

홍콩 우종욱 **Director** (852) 2289-1243 jongwook.woo@hk.pwc.com

(Advisory) 한승희 **Partner** (86) (21) 2323-3167 jennifer.s.han@cn.pwc.com



## 全维度中国税务资讯平台“税界”3.0全新上线

不止于随身知识导航，更是你的专属税务智囊



苹果手机下载  
(iOS 10以上)



安卓手机下载  
(Android 6.0以上)



- 安卓手机也可以在腾讯应用宝中搜索“税界”进行下载
- “税界”网页版链接：<https://shuijie.pwccn.com>



文中所称的中国指中国内地，不包括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和台湾地区。

本刊物中的信息仅供一般参考之用，而不可视为详尽的说明。相关法律的适用和影响可能因个案所涉的具体事实而有所不同。在有所举措前，请确保向您的普华永道客户服务团队或其他税务顾问获取针对您具体情况的专业意见。本刊物中的内容是根据当日有效的法律及可获得资料于 2021 年 6 月 3 日编制而成的。

这份中国税务/商务新知由普华永道中国税收政策服务编制。**普华永道中国税收政策服务**是由富经验的税务专家所组成的团队。团队致力搜集、研究并分析中国内地、香港地区和新加坡现有和演变中的税务及相关商务政策，目的是协助普华永道税务部专业人员提供更优质的服务，并通过与有关的税务和其它政策机关、学院、工商业界、专业团体、及对我们的专业知识感兴趣的人士分享交流，以保持我们在税务专业知识领域的领导地位。

如欲了解更多信息请联系：

马龙

电话: +86 (10) 6533 3103

[long.ma@cn.pwc.com](mailto:long.ma@cn.pwc.com)

有关最新商业问题的解决方案，欢迎浏览普华永道 / 罗兵威永道之网页：<http://www.pwccn.com> 或 <http://www.pwchk.com>

# [www.pwccn.com](http://www.pwccn.com)

© 2021 普华永道。版权所有，未经普华永道允许不得分发。普华永道系指普华永道网络中国成员机构，有时也指普华永道网络。详情请进入 [www.pwc.com/structure](http://www.pwc.com/structure)。每家成员机构各自独立，并不就其他成员机构的作为或不作为负责。